

읍·면·동의 폐지·설치·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

시·도지사	직인
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	직인
읍·면·동의 장	직인
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

3. 읍·면 설치

가. 읍·면의 명칭 :

나. 사유 (구체적으로 기재)

- 지역개발 측면:
- 행정수요 측면:
- 특수한 여건:

다. 관할구역

읍·면 명 칭	관 할 구 역
읍·면	
읍·면	

라. 기구 및 정원

- 기 구: 과 담당(변경 전) → 과 담당(변경 후)
- 인 력: 명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기 능	기 타	비 고
필요 인력	명								
기 존									
증 원									

마. 청사 활용계획

구 분	필 요	현 재	부 족	대 책
계				
대 지(k㎡)				
건 물(k㎡)				

※ 기존 청사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, 부족분은 수리·개수하여 사용

바. 필요 예산 및 확보대책

◦ 필요 예산

계	인 건 비	청 사 비	차 량 비	시설비·경상비	기 타
천원					

◦ 확보대책

4. 법정동(法定洞) 설치

가. 동의 명칭:

나. 신설 사유:

다. 관할 구역:

동 의 명 칭	관 할 구 역
동	
동	

5. 지역의견

가.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

나. 해당 지방의회 의견

다. 종합의견(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)